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10월 6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 동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축주 및 최초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을 정한 것으로
- 동 조례 제4조 제3항 후단 규정에 “분양 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1가구 2주택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1가구 2주택의 판단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1가구 2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주민등록표” 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규정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및 30세이상의 단독세대주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이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 증빙서류를 분양받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1가구 2주택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조례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경감규정에 있어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분양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간 이의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지방세를 과징함에 있어 행정추진상의 착오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해당여부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지방

세과징상의 착오내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가구 2주택의 정의와 해당여부 입증 규정을 신설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칙 부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